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의원정수가 16명에서 15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안 제2조제3호)
- 나. 비례대표의원은 다른 상임위원으로 배정(안 제4조 “제4항” 신설)

3. 관계법령

- 가. 공직선거법 제23조
- 나.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

4.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안은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조정 및 상임위원회 배정에 관한 내용으로

- 지난 3월 개정된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사하구의회 의원의 정수도 16명에서 15명으로 감소 조정됨으로써 종전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에서 7명으로 하여 현재 7명의 총무위원회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조정하였음

- 이는 총 15명의 사하구의회 의원 중 의장을 제외한 全 의원을 2개 상임위에 동일한 인원으로 배정하여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광역시의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나 향후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추어 기능별 상임 위원회 명칭 및 인원 조정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됨
- 그리고 비례대표의원의 다른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는 내용의 신설 조례안은 정당 득표율에 의거 의원에 당선된 정당별 비례대표 의원에 대하여는 소속 정당에 구애 받지 않고 소신과 견제기능 본연의 의정활동을 다하기 위하여 각각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요구 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